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입 축산물 유통흐름 추적체계 마련으로 안전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 축산물 회수 조치 가늠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2 제4호)

○ 신설법안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간미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에만 해당)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포장육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 종류·원산지·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함

※ 등급의 경우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기재해야 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에 한함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및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자·생산량·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작성. 이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

※ 현재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게만 판매일·판매처·판매량 수입일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토록 규정



■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3 제3호)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 식육의 종류·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 및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보관·판매해야 함

- 식육을 포장하지 않고 진열·판매하는 경우 :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음
- 식육을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 : 포장일자·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추가로 표시해야하며, 허위작성 금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해야하고 허위 표시는 안 됨

- 식육부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진열·판매하는 경우 :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음

○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별지 제38호 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포장육 포함)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 및 배입치 등을 허위작성 않고 기록함. 기록은 매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

○ 신설법안

-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제외)의 영업자 : 판매하는 식육(식용 부산물 포함)·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그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식육가공품 제외)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및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함

※ 식육가공품은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제외)의 영업자 :

영업자(「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자 및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포함) 간의 거래에 관해 축산물의 거래내역서류 작성.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관계서류 허위 작성·보관해서는 안 됨)

※ 현재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만 음식점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식육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 다만 [별표 12 제4호], [별표 13 제3호] 중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신설 법안은 개정 추진 중임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함.

